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2. 2.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4년 11월 8일
-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15일
- 라. 상정일자: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2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 실태조사, 지원사업,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안 제6조~제8조)
- 통합지원체계 활용, 시행규칙(안 제9조,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명시함.
- 안 제5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및 수립에 대해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열거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활용을 명시함.

○ 검토 결과

- 흔히 가출 청소년으로 불리는 가정 밖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정해체,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자발적으로 집에서 나온 청소년들을 일컫는 말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은 거주지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범죄에 노출되기도 쉬운 것이 현실임.
-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17,05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의 ‘가출 경험 여부’에 따르면 2.5%로 나타났다음을 알 수 있음. 비율로 따져 볼 때는 낮지만 인원으로 계산해보면 426명이나 가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아울러 최근 1년안에 가출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출의 주된 원인도 가족과의 갈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따라서 안 제3조와 안 제5조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최소화와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예측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강구하여 제정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은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여 정신건강, 교육,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예컨대 부모의 학대로 인한 높은 비율로 우울증, 불안장애, 집중적 상실 경험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함. 또한 교육 측면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정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집중력 저하로 교육 기회의 단절까지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 초래 가능성이 높음. 한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범죄에 가담, 무계획적 지출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과 청소년 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극대화한 조문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는 현재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관련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 안 제9조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여 기관을 연결하는 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으로 보다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서울시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서울시, 광진구, 금천구 3군데에서 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최소화와 함께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은 다양한 청소년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고 방치될 경우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 취지와 그 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451 |
|----------|-----|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전승관·차인영·이순우  
최인순 의원(4인)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가정 해체 등의 문제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 다. 실태조사, 지원사업,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안 제6조~제8조)
- 라. 통합지원체계 활용, 시행규칙(안 제9조, 제10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가정·학교·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